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65 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 박덕흠 · 구자근 · 고동진

이종배 · 김승수 · 김예지

강승규 · 조지연 · 박성민

김상욱 · 장동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, 횡령·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'친족상도례'를 적용하고 있음.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,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.

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.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, 헌법재판소는 202 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림

이에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

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(안 제328조·제344조·제365조 삭제, 제354조 및 제361조). 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8조 및 제34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54조의 제목 "(親族間의 犯行, 動力)"을 "(動力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第328條와 第346條"를 "第346條"로 한다.

제361조의 제목 "(親族間의 犯行, 動力)"을 "(動力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第328條와 第346條"를 "第346條"로 한다.

제36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친족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	<삭 제>
①直系血族, 配偶者, 동거친족,	
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	
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	
<u>한다.</u>	
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	
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	
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.	
③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	
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	
用하지 아니한다.	
第344條(親族間의 犯行) 第328條	<u><삭 제></u>
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	
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	
<u>다.</u>	
第354條(親族間의 犯行,動力)第	第354條(動力) 第346條
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	
章의 罪에 準用한다.	
第361條(親族間의 犯行,動力)第	第361條(動力) 第346條
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	
章의 罪에 準用한다.	
第365條(親族間의 犯行) ①前3條	<u><</u> 삭 제>
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	
第328條第1項,第2項의 身分關	

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.

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. 但,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.